

일반공급(가점제)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2021년 5월 7일 이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상세' 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서약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
	자금조달계획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 ※ 모든 주택형 제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공급신청자의 등본상 등재된 경우)
	복무확인서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제 필요서류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비속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공급신청자의 등본상 등재된 경우)
		손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비속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서류	※ 본인 이외에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 서류 추가제출		
	위임장	계약자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건본주택 비치
	인감증명서	계약자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 본인 발급분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계약불가
	대리인 신분증 /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포함)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등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